

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 (안) 심사보고서

1998. 9. 26.

총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9월 16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9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56회 임시회 제7차 위원회 ('98. 9. 26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홍 기

가. 개정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비및 개편에 따라 종전에 등 조례로 규정하였던 구의 하부 행정 기관인 동장 및 동의 관장사무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으로 통·폐합하여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개정골자

○ 동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, 소재지,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현행조례에는 동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 그리고 소재지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과 동장 및 동의 직제와 관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, 국가시책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조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비 및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동장 및 동의 관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이 행정기구설치조례및 동조례

시행규칙에 통·폐합하여 개정됨으로써 동 조례안에서는 동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 그리고 소재지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설치의 근거규정인 제5조 제3항 제3호 및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동의 제제도 폐지되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유남렬 위원) : 각동 인구편차가 심한데, 동사무소 행정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재개편하여 각동 인구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?
- 답변요지(홍 기 총무과장) : 앞으로 동 업무기능전환과 관련,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 안 의 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
번호

--

제출일자: 1998. 9. .

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비 및 개편에 따라 종전에 동 조례로 규정하였던 구의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 및 동의 관장 사무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으로 통·폐합하여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동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, 소재지,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
3. 조례안 : 별첨

4. 참고사항

가 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(1995.12.29 법률 제5,069호) 제4조제5항,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종전 조례와의 차이점

- 종전 조례에 규정되었던 동장 직급등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정원, 직제 및 관장사무가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에서는 삭제됨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 규정 등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(이하“동사무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,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명칭과 소재지,관할구역)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은 “별표”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>

동사무소 설치,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

구 분	동사무소 (명 칭)	동사무소 소재지	법 정 동 관 할	
			전 지 역 관 할	일 부 지 역 관 할
마포구	아현제1동	아현동 417-7		아현동중 마포로 이동지역
	아현제2동	아현동 339-3		아현동중 마포로이서 지역으로서 아현동 267의 5를 기점으로 282의 2, 동 339의 3, 동 341의 2와 동 350의 1을 경유, 동 350의 4에 이르는 도로 이북지역
	아현제3동	아현동 615-1		아현동중 아현 제1, 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
	공덕제1동	공덕동 29-6		공덕동중 105의 3을 기점으로 동 105의 51을 경유 동 118의 1에 이르는 도로 이동지역
	공덕제2동	공덕동 378-6		공덕동중 공덕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
	신공덕동	신공덕동 26-4	신공덕동	
	도화제1동	도화동 357-8		도화동중 16-5를 기점으로 동 175 - 1, 동 176-1, 동 179- 12, 동 341, 동 347-2, 동 6-27을 경유하여 주택개량재개발도화구역제2지구 구획선을 경계로 하여 363-143에 이르는 도로의 이북지역
	도화제2동	도화동 346-3		도화동중 도화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
	용강동	용강동 259-1	용 강 동 토 정 동 마 포 동	
	대흥동	대흥동 32-29		대흥동중 대흥동 16의 63호를 기점으로 16의 92호를 경유 3의 29호를 연결하는 10도로를 경계로 한 이남지역
	염리동	염리동 147-14	염 리 동	
	노고산동	노고산동 1-50		노고산동중 신촌로타리를 기점으로 노고산동 56의 90호를 연결하는 도로 이서지역을 제외한 전역과 대흥동중 대흥동 16의 63호를 기점으로 16의 92호를 경유 3의 29호를 연결하는 10m도로를 경계로 한 이북지역 및 신수동중 용산선(철도)을 경계로한 동북지역

구 분	동사무소 (명 칭)	동사무소 소재지	법 정 동 관 할	
			전 지 역 관 할	일 부 지 역 관 할
마포로	신 수 동	신수동 371-18	현 석 동 구 수 동	신수동중 노고산동장이 관할하는지역을 제외한 지역
	창 전 동	창전동 145-3	창 전 동	
	상 수 동	상수동 356-4	상 수 동 하 중 동 신 정 동 당 인 동	
	서 교 동	서교동 369-8		서교동중 동교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
	동 교 동	동교동 153-33		서교동중 338의 20을 기점으로 345의 30에 이르는 성산로 동북지역과 노고산동중 신촌로타리를 기점으로 노고산동 56의 90호를 연결하는 도로 이서지역
	합 정 동	합정동 459-5	합 정 동	
	망원제1동	망원동 403-22		망원동중 망원 제2동장 관할지역을 제외한 전역
	망원제2동	망원동 436-42		망원동중 망원동 482의 7을 기점으로 453의 44에 이르는 구거와 205의 2,304의 5,304의 3 망원제방을 경유하여 한강수면 영등포구 경계까지 이르는 직선의 서북지역
	연 남 동	연남동 223-91	연 남 동	
	성산제1동	성산동 275-3		성산동중 119번지를 기점으로 동185, 동 354의 2에 이르는 사천 이동지역
성산제2동	성산동 147-21	중 동	성산동중 성산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	
상 암 동	상암동 140-3,8	상 암 동		